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6. 29.(월))

1.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80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61호)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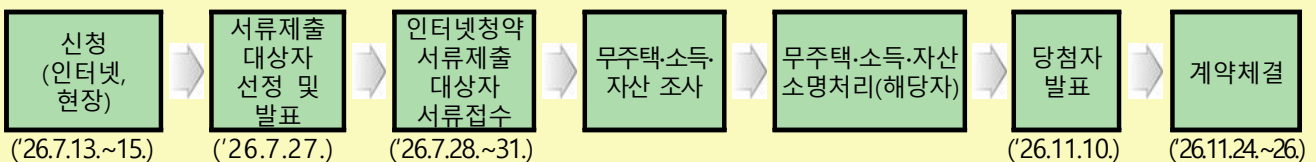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6. 29.(월)이며, 이는 일반적인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즉,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는 해당 산정시점에 조회된 것으로 적용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61호)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122호) 및 군관사(100호)와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6. 29.(월))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혼인기간 7년 이내 : 2019. 6. 29. 이후 혼인신고(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6세 이하 자녀 : 2019. 6. 30. 이후 출생(태아 포함)
 - 2)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2019. 6. 30. 이후 출생, 태아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주택형	주택 타입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총 계			30	31								
55형	55AH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8	19	55.9900	25.0420	12.6551	37.3456	131.0327	10~14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 / 개별난방	'27. 9. (예정)
	55AL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	9	55.9900	25.0420	12.6551	37.3456	131.0327			
55형 (주거약자용)	55AS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3	3	55.9900	25.0420	12.6551	37.3456	131.0327			

-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61호)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122호) 및 군관사(100호)와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은 세대면적·주택평면에 따른 구분없이 55형 단일 주택형별로 청약접수 받으며, 신청자격에 따라 '55일반' 또는 '55주거약자'로만 선택이 가능하고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9월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가스쿡탑 3구)이 설치됩니다.

■ 임대조건

(단위 : 원)

주택형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55형	223,200,000	11,160,000	212,040,000	874,200	(+) 104,000,000	327,200,000	354,200
					(-) 188,000,000	35,200,000	1,422,530
55형 (주거약자용)	223,200,000	11,160,000	212,040,000	874,200	(+) 104,000,000	327,200,000	354,200
					(-) 188,000,000	35,200,000	1,422,53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 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연 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연 3.5%를 적용합니다.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가(내국인)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공고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이 완료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신청 후 외국인 세대구성원의 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이 말소되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공고일 현재 외국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 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공고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이 완료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됨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6. 29.(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④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④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됨)

-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 (한부모가족) 6세이하(2019. 6. 30. 이후 출생, 태아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 혼인기간 7년 이내 : 2019. 6. 29. 이후 혼인신고(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 6세 이하 자녀 : 2019. 6. 30. 이후 출생(태아 포함)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452,897원 이하	110%	7,626,151원 이하	130%
3인	8,168,429원 이하	100%	9,802,115원 이하	120%
4인	8,802,202원 이하	100%	10,562,642원 이하	120%
5인	9,326,985원 이하	100%	11,192,382원 이하	120%
6인	9,906,263원 이하	100%	11,887,516원 이하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379,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413,000,000원	54,51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0인	100%	345,000,000원
		4인 이상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	2인	0인	13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0인	120%	345,000,000원
		4인 이상	1인	130%	379,000,000원	49,960,000원
			0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3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40%	413,000,000원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7,626,151원 이하	8,212,778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10,618,958원 이하	11,435,801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11,442,863원 이하	12,323,083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12,125,081원 이하	13,057,779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12,878,142원 이하	13,868,76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됩니다.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6. 29.(월))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단, **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 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영등포구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영등포구 외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는 자

• 배점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청약저축 포함)만 적용함)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영등포구 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영등포구 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 터 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6000311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예시 : '20년 1월 서울시 전입 → 26년 1월 고양시 전입 → 26년 3월 서울시 전입'일 경우 26년 3월부터 공고일까지로 배점 기간 산정)

※ 특별시, 광역시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청약저축 포함)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주택)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주거약자용주택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6. 29.(월))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됨)

“주거약자” 란?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65세 이상인 사람(고령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⑦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서울특별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확인서 제출시에만 인정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공고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완료한 외국인 배우자

*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6. 29.(월))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 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 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영등포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서울특별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확인서 제출시에만 인정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공고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완료한 외국인 배우자

*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주거약자용주택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26. 7. 13.(월) 10:00 ~'26. 7. 15.(수) 17:00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청약신청 내용 변경은 청약신청 기간 중 가능 (청약신청 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 [현장접수] '26. 7. 14.(화)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12, LH서울지역본부	'26. 7. 27.(월) 17:00 이후 (확인방법)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26. 7. 28.(화) ~ '26. 7. 31.(금) (서류제출방법)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26. 7. 31.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택배, 현장 접수 불가 (등기우편 발송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12, 주택관리팀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앞	'26. 11. 10.(화) 17:00 이후 (확인방법)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확인 또는 * ARS(1661-7700)	'26. 11. 24.(화) 10:00 ~'26. 11. 26.(목) 17:00 (계약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 '26. 11. 25.(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12, LH서울지역본부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연기)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 **[청약접수]**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청약신청 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 서류(공고문 5. 신청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26. 7. 31.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12, 주택관리팀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같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청약신청기간 : '26. 7. 13.(월) 10:00 ~ '26. 7. 15.(수) 17:00]

○ 인터넷(PC) 청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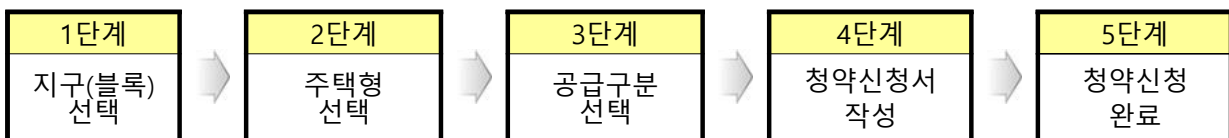
-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청약신청기간 : '26. 7. 13.(월) 10:00 ~ '26. 7. 15.(수) 17:00]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6. 7. 13.(월) 10:00시부터 접수마감일 2026. 7. 15.(수) 17:00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PC·모바일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 「5.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기 간	'26. 7. 14.(화)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교통편	- 지하철 : 7호선(분당선) 강남구청역 2번출구 / 9호선 선정릉역 1번출구(강남구청역 방향) - 지선버스 : 3426, 4312, 3414 - 간선버스 : 242, 401, 351, 472 - 마을버스 : 강남08
약도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6. 7. 27.(월)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외 일반우편 및 택배 등 모두 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간('26. 7. 28.~7. 31.) 내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6. 7. 31.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12, LH서울지역본부 주택관리팀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앞
 -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 6. 29.(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해당 세대 : 공고문 3P 확인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신청자 포함)이 정자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해당 세대 : 공고문 3P 확인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 단, LH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LH임대주택 거주'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 불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수락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첨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대상) 전체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1통

<p>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해당자만 제출]</p>	<p>※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p>※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p>※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p>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p>※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공고일 현재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완료된 사람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신청 후 외국인 세대구성원의 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이 말소되거나 외국인등록 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p>	1통
<p>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p>	<p>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p>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p>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별첨2)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별첨2)	-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1)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2) 주민등록표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대표 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계층	해당자만 제출	[거주자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및별이 신청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 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가입은행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⑧ 중증장애인 배점을 받으실 경우 [주거약자용 신청자에 한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6. 11. 10.(화) 17: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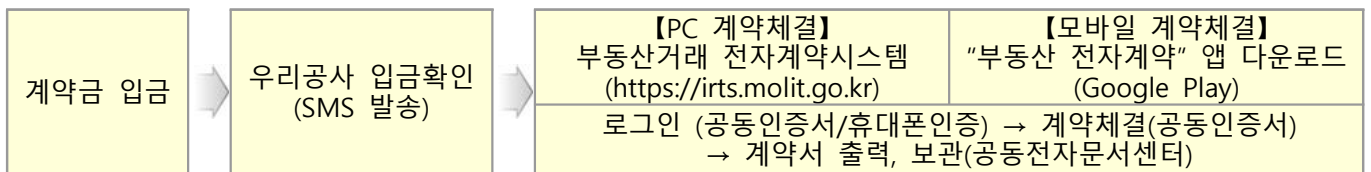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추첨 결과는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클릭
-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 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6. 11. 24.(화) 10:00 ~ '26. 11. 26.(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 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 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6. 11. 25.(수) 10:00 ~ 17: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생략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별첨3),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첨3),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 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부동산	<p>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총자산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p>*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총 자산	사업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기타 자산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직권조사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 한 기 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입주자격</th> <th style="width: 50%;">최대 거주기간</th>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미성년자만 해당</td> </tr> </table>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미성년자만 해당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미성년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p>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p>예비입주자</p>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p>갱신계약 등</p>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border="1" data-bbox="322 1608 1461 1803">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 선정(당첨자 발표)일 전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해지(위약금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검증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거나 LH 청약플러스에서 연락처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 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은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단지 내 차량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며,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 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집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 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및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p>※ 청약 신청·계약 체결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 내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구 내·외부 여건 (지구 내 또는 지구 인근의 혐오시설 등)

-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65호, 2025.12.31.)로 승인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군관사(대방) 위탁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단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 대방역(1호선, 신림선(경전철))이 위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신림선과 인접하여 열차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40m도로와 지하차도가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약10m지점에 성애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구급차의 사이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례식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모텔 등 어린이에게 유해환경, 시설물이 존재합니다.
- 단지 북측 청년주택이 공사중이므로 입주 후 공사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 공군회관(공군아트센터, 공군호텔, 주차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경계 외부에 설치된 전신주는 입주 후에도 존치됩니다.
- 단지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조성사업 과정에서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단지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기반시설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입주 시까지 조성되지 못할 수 있으며, 주변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단지는 군관사 및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행복주택 등과 함께 군관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학교시설 배정은 영신초등학교, 영원중학교이며, 학교의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교육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어 청약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에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비로고·벽체줄눈·외부조명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단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강화합판마루,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창호, 부대시설 그릴고정창 및 그릴문, 부대시설 창호,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 벽돌, 속빈콘크리트블럭,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 인조화강석블록, 가압급수 펌프, 배수용수중모터펌프, 조립식물탱크, 중앙관제장치, 자동제어, 발전기, 변압기, 태양광, 경관 조명, 수배전반, 전동기제어반, CCTV, 차량출입 및 주차관제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 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PAD TR(근생 8호) 및 PAD SW(로터리 조정축)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시공 중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북측 8m도로, 단지 서측 8m도로(일방), 단지 남측 15m도로, 단지 동측 40m도로가 위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측의 40m도로에 교통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높이 9.0m)이 단지 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북측 어린이 승하차장 차량출입구 인근에 모텔이 2개소 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서측 경계변에 성애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구급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인근 성애병원 응급실 앰블런스 운영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반경(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신길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영신초등학교, 우신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송의여자중학교, 성남중학교, 강남중학교, 영원중학교, 윤중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송의여자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장훈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단지에 대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 오류 등 경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 모서리부위는 국방부 부지로 당 사업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 서측도로와 남측 도로 중 일부 구간은 영등포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상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단지 경계 주변 다수의 한전 가공전주 및 가공통신선로가 설치되어있어(이설 및 철거 없이 존치예정), 세대 미관조망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시설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한전주 및 통신선로(가공)는 철거나 이설 없이 존치될 예정이며,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여건

- 101동 1,2호라인 출입구는 동 중앙의 중정을 통해 진입합니다.
- 101동 2호라인(2개층 필로티), 3호라인(1개층 필로티), 5호라인(1개층 필로티)가 설치됩니다.
- 101동 1호라인 1층은 게스트하우스, 4호라인 1층은 근로자휴게소, 6호라인 1층은 장난감은행 상부로 설치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2호라인(2개층 필로티), 3호라인(2개층 필로티)가 설치됩니다.
- 102동 1호라인 1층은 관리사무소, 3호라인 1층에는 주민회의실, 4호라인 1층에는 경로당이 설치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101동·102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습니다.
- 103동은 전체 세대가 군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이나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103동 4호라인 1층에는 군관사용 관리사무소와 군관사용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됩니다.
- 단지 공공시설물은 공공분양주택, 행복주택 및 군관사 입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전용 게스트하우스, 군관사용 관리사무소, 군관사용 게스트하우스 제외)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동 출입구는 필로티로 시공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필로티, 경사램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분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외의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유아시설, 경로당 등), 통합커뮤니티센터 등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1층~지상2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일부 주민공동시설은 주동 하부에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필로티 구조 배치 등 안전상의 사유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녹지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 및 시설물은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영구배수로 인한 공용 전기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는 각 동 주변에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생활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층 세대는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 조경시설물은 추후 인허가 변경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 및 지상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뽀칠로 시공됩니다.
- 스마트우편함은 각 동 1층 출입구에 무인택배함과 통합형으로 설치 예정이며,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며 층, 동별 타입별로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담장,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가스배관 매립설치로 보도블럭 및 포장면에 가스관로 라인마크가 시공됩니다.
- 단지 경계부는 생활타리 담장 등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시공과정(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 옆 옥외연결송수구가 설치되어 식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 화단 주변 매물형 가스밸브 설치로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저층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드레인 및 배관의 위치와 개수 등이 다릅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됩니다.
- 주동 전후면 공기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교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펌프실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여 인근 동은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정화조가 설치되어 장비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화조 101동 지하층 / 펌프실·저수조·전기실·발전기실: 102동 지하층 / 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의 급배기구 : 102동 지상]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지하1층에 계절창고(101동 일반 13개, 확장 27개, 102동 일반 5개, 확장 12개)가 설치되며,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일부구간 벽체배수관이 설치되며, 벽체배수관과 인접한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중계 장치는 지하주차장 1층 PIT에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지하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설치를 원할 경우 입주 이후, 관리소와 협의 후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급속:1대, 완속:16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설치 불가)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환ลม 및 환기탑 외부 마감은 석재질감도료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ลม이 설치되며, 환ลม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되고,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구, 제연급기구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오수 정화 및 배출을 위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101동 인근), 정화조 배기를 위한 덕트가 지하1층 주차장을 통해 101동에서 103동까지 연결되고, 103동 옥탑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정화조 배기 악취 제거를 위한 기계설비가 외부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 저해 및 상부 세대 일부에서 진동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정화 및 배출을 위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103동 인근), 정화조 배기를 위한 입상덕트는 근린생활시설(상가) 덕트통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 옥탑층에는 정화조 배기 및 악취 제거를 위한 기계실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근린생활시설 인근 주동 일부에서 진동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 설치된 공동주택 정화조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정화조 청소를 위해 작업차량이 주기적으로 단지 내부로 진입할 수 있으며 작업 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부대시설로 연결되는 통로는 없으며 지상을 통한 이동이 필요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본 단지의 지하1층 주차장 및 출입구의 유효 천장고는 2.7m로 택배 배달용 탑차등의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2층 및 지하3층 주차장의 유효 천장고는 2.3m로 계획되어 높이 2.3m 이하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 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총 340대(지하1층 111대, 지하2층 113대, 지하3층 116대)로 세대당 1.2대이며,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4대로, 총 344대 중 11대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군관사(100세대)와 공동사용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지상주차장 4대 중 1대는 장애인이 주차 가능한 크기(3.3m×5.0m)로 설치 예정이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비장애인이나 하역주차 등의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구획은 일반주차, 확장주차, 여성우선일반주차, 여성우선확장주차, 임산부주차, 장애인주차, 경차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주차로 구성되며,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구성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단지여건상 지하에 동별 세대수비율에 따라 설치되며 온습도에 민감한 물품은 보관이 어렵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기계실과 인접되어 승강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경우, 101동(1·2호 라인 지상 28층/1대, 3·4호 라인 지상 21층/1대, 5·6호 라인 지상 20층/1대) 및 102동(1·2호 라인 지상 13층/1대, 3·4호 라인 지상 17층/1대), 103동(1·2호 라인 지상 29층/1대, 3·4호 라인 지상 22층/1대) 간 1대당 사용하는 층수가 다릅니다.
- 외부 엘리베이터의 경우 102동 주동과 접하여 서측(1개소) 북측(1개소) 설치됩니다.
- 102동 301호, 302호, 401, 402호(E/V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발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환기설비가 설치되며,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에만 제습기가 추가설치 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승강로 및 관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 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 15층 이상 세대 및 101동 5,6호 라인은 사다리차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관리 사무소와 협의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할 수 있습니다.**

(옥탑층)

- 101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될 예정이며, 101, 103동의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101, 103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및 태양광 모듈의 빛 산란에 따라 일부세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 오·배수 통기관, 주방과 욕실의 배기를 위한 배관 및 설비가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 저해 및 상부 세대 일부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붕층에 주방배기를 위한 팬이 설치됩니다. 장비 작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층 옥상에 세대 주방, 욕실 환기용 흡출기가 근접해있어 상층 및 주위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및 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방 배기는 공용배기 방식으로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며 세대 레인지후드에는 팬이 설치되지 않고 댐퍼만 설치됩니다.

(부대시설)

- 경비실,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로당, 통합커뮤니티센터, 게스트하우스 실외기실에 실외기가 배치되며, 실외기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실내놀이터, 장난감은행,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이 있으며, 실내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 발코니2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 문과 벽 및 기타 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탁실 출입을 위하여 출입문을 탈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2 천장에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며 사용시 주변 시설물(세탁기, 건조기 등)과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빨래건조대가 시설되는 실은 자동빨래 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 점등되어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2에는 세탁기 및 가스보일러, CO감지기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2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2 가스계량기 교체 주기는 보통 5년마다 교체.검정.재검정을 받아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도시가스 공급업체). 계량기 교체 시 시설물(세탁기, 건조기 등)과 간섭 발생으로 인한 이동하는 경우 입주자 부담 이설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우수 및 배수를 위한 배관이 노출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창호 외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층별·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단지는 개별난방단지로서 각 세대별로 보일러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발코니2 내에 가스배관 및 요금 부과를 위한 계량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설치가구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원에 따라 세탁기와 건조기의 병렬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2에는 세탁기 전원용 콘센트만 설치되고 실외기실에는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만 설치됩니다.
- 발코니1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선홍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2에 개별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마감)

- 단위세대(55m²) 설계부하용량은 4,650VA입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매립 다운라이트로 설치되며 위치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조명기구와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실외기실 조명은 벽부 등으로 설치됩니다.)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며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인덕션 차단, 거실 및 침실 조명 네트워크스위치,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통화서비스, 대기전력차단서비스(전체 콘센트의 약 30%), 단지 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합니다.
- 세대 내, 세대분전반이 통로측(현관창고)에 매립설치 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됩니다.
- 생활안내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 등 제외), 엘리베이터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합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현관창고 측면에 설치되며, 세대분전반은 현관창고 복도 측면에 설치됩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급, 배기 환기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가스 입상라인은 각 세대별 외벽에 설치되며, 저층부 2층 세대는 방범용 커버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전기콘센트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강화합판마루는 제품의 신축팽창으로 인하여 줄눈 간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주방 등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급배기 디퓨저 위치는 실내마감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 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세대 아트월 부위는 경량벽체인 부분은 별도 보강하여 경량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가 미시공됩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구 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신발장, 욕실장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 없이, 주방가구 하부장 바닥만 도장마감이며, 주방가구와 접해있는 벽체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 또는 침실)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
- 기본형인 가스쿡탑이 적용되며, 상부에 자동식 소화기(하이브리드용)가 설치됩니다.

(실외기실)

- 세대 발코니 내 완강기가 설치되는 세대(하부가 필로티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는 최하층 세대 중 일부)는 101동(3층 2호)세대, 102동(3층 1, 2, 3, 4호)세대이며, 101동 2층 1호 세대 및 3층 일부 세대~최상층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유닛이 설치됩니다. 장비 작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는 실외기실이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 및 단지 출입 시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원활한 피난을 위해 상부세대 또는 하부세대와 서로 반대 위치에 설치 예정입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외기실에는 철제여닫이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이므로, 하향식 피난구에 물건 적재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이 불가하며 원활한 피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 배관 등이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가전제품 설치 시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내부마감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상부층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설치되므로, 세대에 따라 설치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욕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2의 수건걸이는 문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내부, 상부세대 오,배수 배관이 설치되며,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동별 세대배치에 따라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2 내 레인형 샤워기 이용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샤워기는 절수형으로 설치되어 수압이 다소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욕실 양변기는 관련법에 따라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의 실내놀이터의 경우 바닥 난방은 적용되지 않으며, 냉난방겸용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학교 배정은 관할 교육청에서 행정구역 및 학생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및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청약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학교설립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학생 수용여건, 학생 수용 계획 등에 따라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①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②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③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③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해당없음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절수형 기기 사용	★★★

④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법안전 콘텐츠	★★

⑤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 여부	구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직접면)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홈네트워크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서울대방(복합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동아건설(주) (106-81-33808) 금호건설(주) (104-81-3130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 02-2017-4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6. 11. 24.(화) 10:00 ~ '26. 11. 26.(목) 17:00]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관리팀

임대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li style="padding-left: 20px;">-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li style="padding-left: 20px;">-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접수처 약도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29.



서울지역본부